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71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서명옥・박준태・서천호

배준영 • 박정하 • 조정훈

김석기 · 강선영 · 강명구

김용태 · 강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 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
	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
	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공
	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
	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
	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① (생 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

	매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자
	<u> </u>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